

2023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재외동포청 소관

2024. 8.

외교통일위원회

2023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4. 8.
외교통일위원회

I. 소관 기관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재외동포청 소관

○ 일반회계 : 예비비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5. 31.

2. 회부일자 : 2024. 6. 27.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재외동포청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13.)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예산 · 결산 · 기금심사소위원회 (2024. 8. 28.)

- 상정 · 대체토론 · 원안의결

○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29.)

- 상정 · 대체토론 · 원안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재외동포청 소관 :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V.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은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 등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동포청 출범(‘23.6.5.)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환경 조성 등 ‘재외동포 행정지원’을 위한 총 219억 9,700만원의 일반예비비로, 이 중 70.6%인 155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항	프로그램명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내 역
일반 예비비	재외동포 지원	4,752	4,661	-	91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재외동포 행정지원	17,245	10,873	1,565	4,807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환경 조성 -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합 계		21,997	15,534	1,565	4,898	

가.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2,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200만 원을 집행하고 9,1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예비비 편성 대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123	32	-	91	
합 계	123	32	-	91	

□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부족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사업착수 과정에 수반되는 정책대상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자 업무 협의, 대외 아웃리치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았음.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독립기관 단위의 신규정책 관련 예산소요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재외동포청 출

법에 따른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위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배정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 내 조정을 통한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재외동포담당관회의 개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설명회, 기본계획 설명자료 제작 등 다수의 사업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중복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 >

세부사업명	예산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예비비] 32백만원 * (일반수용비) 원폭피해동포 초청 관련 번역·사할린 영주귀국 법률자문 11백만원, 기타 정책업무 관련 소모품·회의용품 등 9백만원 * (임차료)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사할린 영주귀국 설명회 출장 3백만원 * (사업추진비) 재외동포담당관회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4백만원

재외동포청은 예비비를 배정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해외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국외 업무수행이 제한되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동일 비목의 예산 여유분을 우선 집행하여 단가 절감 노력 등에 의하여 예비비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정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임.

향후 재외동포청은 예비비의 사용계획시 기정예산으로 충당가능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나.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 46억 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3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600만원은 이월하고 5억 6,6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예비비 편성 대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4,629	3,618	646	566	
- 인건비	2,980	2,631	530	20	
- 경상운영비	1,649	987	116	546	

□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외교부에서 이체된 기정예산 2억 100만원 및 예비비 배정액 29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31억 8,1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이 중 2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 주요 이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억 9,200만원, 조기퇴직수당 7,200만원, 경영평가성과급 1억 4,700만원 등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을 정원 내에서 고용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을 정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현원은 정원보다 10명이 많은 47명임.

<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운영 현황(2024. 1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임원	일반직						무기 계약직	별도 정원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	1	4	8	10	11	-	-	1	37
현원	2	-	7	7	10	18	2	-	1	47*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정원 초과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금규정」 부칙 제3조(한시적 조기퇴직금 지급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하였고¹⁾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조기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본연봉월액의 12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인건비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 내역	이월액	이월사유
보수 (110-01)	명예퇴직 수당	292	· '24년에도 추가 수요조사 실시하여 명예퇴직 시행 예정
	조기퇴직 수당	72	· '24년에도 추가 수요조사 실시하여 조기퇴직 시행 예정
	'23년 경영평가 성과급	147	· 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회가 2024년 1월 개최되어 사고 이월
고용부담금 (320-09)	4대보험료(12월분)	19	· 센터 임직원 12월분 보험료 등
합계		530	

1) 2023. 6. 5. 「퇴직금규정」을 제정하면서 특례규정을 신설함.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4년에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²⁾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3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인건비 이월은 명예퇴직·조기퇴직 수당 이월집행계획에 따른 것이고 2023회계연도에 퇴직희망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퇴직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므로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³⁾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명예퇴직·조기퇴직 시행시 202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특례규정이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일인 6월 5일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안 편성시 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족한 재원은 지급하지 않은 여유재원의 이·전용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2) 2023. 10월 명예·조기 퇴직 시행으로 1명 퇴직 처리, 퇴직희망자 추가 모집을 통한 감원 필요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IV. 대체토론 요지

1. 재외동포청 소관

없 음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재외동포청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VI. 심사결과

1. 재외동포청 소관

원안의결

VII. 부대의견

없 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IX. 시정요구사항

없 음